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2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4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장연철)

나. 전화번호 : 02-511-0362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44호

3. 명칭 :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사각개구부 모서리에서 발생하는 초기 사인장균열 제어를 위한 합성수지 응력분산곡면판 설치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골조,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기타 철근콘크리트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합성수지 응력분산곡면판을 이용하여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사각개구부 모서리에서 응력집중현상으로 발생하는 사인장균열을 제어하는 공법으로 개구부코너에 집중되는 응력을 원활하게 전달 분산하고 구속효과를 경감시킴으로써, 사인장균열을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수월한 현장시공과 저렴한 단가로 경제적이고, 건축물의 외관을 미려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구조체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종전의 문제점이 해소된 사인장균열을 제어하는 공법이다.

<범위>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사각개구부 모서리에 합성수지 응력분산곡면판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재료특성(건조수축, 온도변형 등)에 의한 초기 사인장균열을 제어하는 공법

5. 보호기간 : 2014.09.26. ~ 2022.09.25(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